
<○○고등학교 스쿨-미투>
교원 성 비위 관련 특별감사 결과보고서

2018. 11.

목 차

I. 개요

- 1. 배경 및 목적 ----- 1
- 2. 대상자 및 범위 ----- 1
- 3. 기간 및 인원 ----- 2

II. 결과

- 1. 총 평 ----- 2
- 2. 지적사항 총괄 ----- 3
- 3. 분야별 지적사항(요약) ----- 4

III.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

- 1. 처분사항 일람표 ----- 5

IV. 기타사항

- 1. 향후 처리계획 ----- 6

1. 배경 및 목적

가. 배경

- ○○고등학교 “교원 성 비위 스쿨-미투” 발생(2018.9.10.)
- ○○과 특별감사 요구[○○과-20056(2018.9.18.)]
- ○○고에서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하여 대전○○경찰서 사안인지(2018.9.11.)

나. 목적

- 학교의 공론화 계정 및 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있는 “교원 성 비위 스쿨-미투” 내용을 감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처분을 통해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준수 및 성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.

2. 대상 및 범위

가. 대상

- SNS 공론화 계정 및 설문조사에 거론 된 해당교사
- ○○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 관련 예방교육
- 사안 발생 후 학교의 대응 및 조치 경과

나. 범위

- ○○고 전·현직 교원 등
-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위반행위
- 「아동복지법」 위반행위
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위반행위

3. 기간 및 인원

가. 기간

- 사전조사: 2018. 9. 21.(금) ~ 9. 28.(금)
 - ○○과 기명 및 무기명 설문조사 분석
 - 관련교사 문답 및 소명서 분석
 - SNS 캡처 자료 및 학교 대응 조사
- 실지감사: 2018. 10. 1.(월) ~ 10. 12.(금)
 - 현장 조사 및 관련 서류 검토, 관련자 문답

나. 인원

- 감사반장: 사무관 ○○○
- 감사반원: 행정○급 ○○○, ○○○, 행정○급 ○○○, ○○○

II 감사 결과

1. 총평

- ‘○○고 스쿨-미투(이하: 본 사안)’ 와 관련하여 SNS계정¹⁾, 무기명 조사서²⁾, 기명 조사서³⁾를 바탕으로 비교적 언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 14명에 대하여 문답을 실시 한 바,
- 매년 학교에서는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, 지속성·반복성·중대성의 정도는 다르나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·성차별적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- 대부분의 교사는 해당 내용을 부인하거나,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, 수업에 필요한 예시나 설명 목적, 단순 격려·칭찬 목적, 학생 생활지도 목적으로 해명하고 있다.

1) 재학생 및 졸업생이 교사 14명에 대하여 제보함.

2) 2018.9.12. 무기명 설문 실시, 설문참여 학생 596명 중 233명의 학생이 교사 17명에 대하여 제보함.

3) 2018.9.18. 기명 설문 실시, 설문참여 학생 599명 중 229명의 학생이 교사 21명에 대하여 제보함.

- 그러나 최근 대두된 미투운동 등 교육분야의 성폭력·성희롱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변화하는 학생들과 달리 교사들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안일한 태도로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었고
- 또한, 학생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폭언이나 강압적 지시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.
- 특히, 특정 교사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(금지행위)에서 정한 ‘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7조의 범죄혐의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필요성이 있고, 이는 「사립학교법」 제61조(징계의 사유 및 종류)에서 정한 ‘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’로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.
- 한편, 부주의한 발언을 하였다고 제보된 일부 교사 3명(○○○,○○○,○○○)은 문답한 결과, 당시 상황이나 발언의 취지를 살펴보면 학생지도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성희롱·성차별의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. 위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교원의 사기 저하 및 학생 생활지도 시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처분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.

2. 지적 사항 총괄

(단위: 건, 명)

합 계			신분상조치(명)				행정상조치(건)				기관 주의	수사 의뢰 (인원)
총 건수	신분상 조 치	행정상 조 치	중징계	경징계	경고	주의	시정	권고	기관 경고	통보		
4	11	-	2	3	2	4	-	-	-	-	-	5

3. 분야별 지적사항(요약)

연번	지적사항(요약)	조치의견
1	<p>○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</p> <p>- 교사 ○○○는 커피를 사준다면 여학생을 차에 태워 도안동으로 이동한 후, 차안에서 학생의 얼굴을 잡으며 입술을 들이 밀었고, 당황한 학생에게 오히려 그러한 상황의 잘못과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함.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을 강제추행하려 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비위에 해당함.</p>	<p>○ 신분상조치: “중징계”</p> <p>- 교사 ○○○</p>
2	<p>○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(중대)</p> <p>- 교사 ○○○은 수업시간에 수년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수의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, 설문에 참여한 학생 229명 중 무려 75명의 학생이 제보하여 제보된 교사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○○○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. 또한,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예시의 방법이 존재함에도 정도가 심한 성적 비유와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.</p>	<p>○ 신분상조치: “중징계”</p> <p>- 교사 ○○○</p>
3	<p>○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</p> <p>- 교사 ○○○은 수업시간에 직접적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함. 또한, 성차별적 발언 및 학생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함. 성적 비유가 아닌 다양한 예시 방법이 존재함에도 성적 비유와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.</p> <p>- 교사 ○○○은 지속적이지는 않으나 수업 시간에 칭찬과 격려를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해 손, 팔, 어깨 등을 잡는 등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친근감의 표현으로 ‘체육복 입은 모습도 이쁘다, 머리가 참 이쁘다’ 라는 발언을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.</p> <p>- 교사 ○○○은 지속적이지 않으나 수업시간에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함. 다양한 수업예시가 존재함에도 성적 비유와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.</p>	<p>○ 신분상조치: “경징계”</p> <p>- 교사 ○○○</p> <p>- 교사 ○○○</p> <p>- 교사 ○○○</p>

연번	지적사항(요약)	조치의견
4	<p>○ 성적언행 등으로 인한 품위 손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사 ○○○은 성적 행위가 지속적·반복적이지 않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수업시간 또는 학생 상담 시, 학생들의 등과 어깨, 팔 부위 등을 부주의하게 접촉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음. - 교사 ○○○은 수업시간에 지속적이지 않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외모평가 발언, 미투 비하 발언 등 성희롱·성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음. - 교사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은 성희롱·성차별적 발언이 지속적·반복적이지 않고 발언의 정도가 경미한 자들로 수업시간 또는 학생 지도 시, 폭언과 강압적 발언을 하거나 성희롱·성차별적 발언을 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도록 함. 	<p>○ 신분상조치: “경고”, “주의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사 ○○○, 교사 ○○○ (경고) - 교사 ○○○, 교사 ○○○ 교사 ○○○, 교사 ○○○ (주의)

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

1. 처분사항 일람표

지적건명	신분상조치(명)			행정상조치(건)			
	징계	경고	주의	시정	개선	기관 경고	통보
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	1
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(중대)	1
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	3
성적언행 등으로 인한 품위 손상	.	2	4

1-1. 신분상 조치

지적건명	소속	직위 (급)	성명	처분	비고
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	○○고등학교	교사	○○○	중징계	
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(중대)	○○고등학교	교사	○○○	중징계	
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	○○고등학교	교사	○○○	경징계	
	○○고등학교	교사	○○○	경징계	
	○○고등학교	교사	○○○	경징계	
성적언행 등으로 인한 품위 손상	○○고등학교	교사	○○○	경 고	
	○○고등학교	교사	○○○	경 고	
	○○고등학교	교사	○○○	주 의	
	○○고등학교	교사	○○○	주 의	
	○○고등학교	교사	○○○	주 의	
	○○고등학교	교사	○○○	주 의	

IV 향후 처리계획

- 학교법인 ○○학원에 징계 등 처분 요구
- 범죄혐의가 있는 해당교사들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자 함.
※ 퇴직교사 ○○○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(강제추행 및 성희롱 혐의)
- 성적피해 또는 인격침해의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등 보호조치